

#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13.

발의자 : 박덕흠 · 이현승 · 류성걸

박대수 · 김성원 · 조명희

백종현 · 성일종 · 김용판

이종성 · 박정하 · 박진

홍문표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. 그 결과, 농수산물 생산 외 가공·유통·판매 등 사업분야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%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. 다만, 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공동창업이나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한편,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 미운영

법인이 누적되고 있음.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어업법인의 설립·경영에 비농업인·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·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요건 완화(안 제17조제2항

- 제6항, 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)

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을 조합원,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,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. 또한, 준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범위를 총회로 명확히 규정함.

나.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(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, 안 제18조의3 신설)

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3년에 1번 변경등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.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

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,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. 또한, 해산간주된 법인이 3년 이내에 총회 결의를 통해 법인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, 해산간주 후 3년간 법인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.

다.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 완화(안 제19조제2항 · 제4항)

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,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로 한정함.



##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후단 중 “의결권”을 “총회에서 의결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“의결권”을 “총회에서 의결권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)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,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3(휴면 조합법인의 해산)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의 내용 · 방법 등은 「상법」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 되고,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 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「상업등기법」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「상법」 제520조의2제1항”은 “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2항”으로, “「상법」 제520조의2제4항”은 “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4항”으로 본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”를 “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빨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립에 참여할 수 있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

도”를 “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립에 참여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3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) ① (생략)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의결권</u> 은 행사하지 못한다.	제17조(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총회</u> 에서 <u>의결권</u> ----- 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의결권</u> 은 행사하지 못한다.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17조의2(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)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

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,  
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  
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 
선출한다.

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 
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 
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.

### <신 설>

제18조의3(휴면 조합법인의 해산)

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  
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  
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  
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  
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  
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 
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 
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의 내용  
· 방법 등은 「상법」 제520조  
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 
사항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 
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 
경과되고, 공고일부터 2개월 이  
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 
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 
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 
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

다. 다만,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 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「상업등기법」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「상법」 제520조의2제1항”은 “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

제19조(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) ① (생략)  
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,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,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
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2항으로, “「상법」 제520조의2제4항”은 “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4항”으로 본다.

제19조(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
② -----  
-----  
-----  
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립에 참여할 수 있고-----  
-----  
-----  
--.  
③ (현행과 같음)  
④ -----  
-----  
-----  
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립에 참여할 수 있고-----

⑤ ~ ⑪ (생략)

⑤ ~ ⑪ (현행과 같음)

--.